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474
----------	-------

발의연월일 : 2025. 10. 2.

발 의 자 : 김용민 · 임미애 · 이성운
최혁진 · 전용기 · 김기표
박균택 · 민형배 · 박지원
김정호 · 박주민 · 민병덕
김승원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형사특별법 개정으로 형사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되어 형사범죄의 사물관할이 단독판사 관할에서 합의부 관할로 변경되는 일이 증가하고 있음. 법정형 상향으로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전형적인 사건을 합의부 재판부에서 관할하게 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합의부가 모든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한편 민생사건의 처리 및 피해자 피해 회복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사건의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와 그 외 기타 사건의 난이도, 중대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

는 사건을 단독관할로 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3호자목 및 차목 신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에 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사건

차. 그 외 기타 사건의 난이도, 중대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 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3. ----- ----- -----.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사건</u>
<u><신 설></u>	<u>차. 그 외 기타 사건의 난이도, 중대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u>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